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80호 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과 그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,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기업출장비중생명∙상해보험료지출세전공제문제  기업직원이공무상출장으로교통수단에탑승하여발생하는생명∙상해보험료지출에대해,기업이과세소득액계산시이를공제하는것을허가한다.  2. 기업 이전자산 소득세 처리 문제  기업에 <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>(국세함[2008]828호)제2조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이전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매수입을 확정해야 한다.  3. 시행시간  본 공고는 2016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한다.  <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>(국세함[2008]828호) 제3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.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6년12월9일 |  | **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80号  　　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，现对企业所得税有关问题公告如下：  　　一、关于企业差旅费中人身意外保险费支出税前扣除问题  　　企业职工因公出差乘坐交通工具发生的人身意外保险费支出，准予企业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。  　　二、企业移送资产所得税处理问题  　　企业发生《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处置资产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》（国税函〔2008〕828号）第二条规定情形的，除另有规定外,应按照被移送资产的公允价值确定销售收入。  　　三、施行时间  　　本公告适用于2016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。  　　《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处置资产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》（国税函〔2008〕828号）第三条同时废止。  　　特此公告。  国家税务总局  2016年12月9日 |